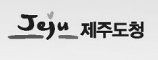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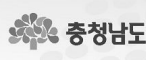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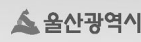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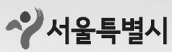


지방이양사무 행·재정지원 제도화 방안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행·재정지원 제도화 방안

이 자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 분권업무 실무자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지방분권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지방이양사무의 행·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지원 제도화 방안(요약)

1 선행연구사례

-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2009년)
 - 기관위임사무 일괄이양에 따른 소요인력 및 비용분석
 - 소요인력 1,621명, 소요경비 1,140억원(제주도 제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법 연구, 2010년)
 - 이양확정사무 중 미이양된 **1,296개 사무대상**, 비용분석 및 지원방안
 - 소요인력 2,383명, 소요경비 6,471억원(제주도 제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방법 연구, 2011년)
 - 기이양된 사무 및 미이양된 사무 비용추정, 재정지원방안
 - 기이양사무(1,678건) 약 1조 3,700억원, 미이양사무(1,262건) 약 1조 7,000억원 소요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자체 입장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상황
 - 2012.12월까지 총 **3,101건 지방이양**(현정부 출범이후 1,587건) 확정
-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입장
 - 지방에 사무만 이양하고, 행·재정 지원이 없어 사무이양에 소극적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비용증가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3 행·재정 지원 및 제도화 추진사례

- 행·재정 지원사례
 -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및 분권교부세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 ※ 26개 법령 개정, 인력 208명, 예산 3,969억원
 -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지원단 구성·운영
- 제도화 추진사례
 - 사무배분 사전심사제도 도입 추진('07년 유기준 의원 발의)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4 해외사례(프랑스)

- 사무이양을 위한 재정 보전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사무배분법 등에 재정 지원 명문화
 -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수상이 임명
 - 사무배분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 재정보전방식
 - 이양에 따른 보전재원을 위하여 세계수입의 이전으로 1/2 지원, 나머지는 사무이양일반교부금으로 지원
- ※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 기준개발과 지원체계 구축(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췌

5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요구

- 지방소비세 인상
 -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재정 보전 등을 위해 단계적 인상
 - 배분방식은 지자체간 이전이 있어 세율인상 후 배분방식 개선
- 분권교부세 인상
 - 분권교부세 시행 이후 복지수요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
 - 분권교부세를 0.94%에서 2% 이상으로 인상 필요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현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10%)
 - 국세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개편

6 행·재정 지원 제도화 방안

□ 지원체계 구축 ⇒ 위원회 차원 지방이양사무 제도적 지원방안

○ 위원회 차원 인력 및 비용 조사·확인 후 관련부처 통보(제1안)

-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인력 및 비용 조사(연1~2회)
- 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련부처 통보(이양 관계부처, 행안부, 기재부)

○ 용역사례 활용을 통한 평균인력 및 비용 산정 후 후 관련부처 통보(제2안)

- 지방행정연구원 지자체 전수조사 자료(2011년) 근거로 평균인력·비용 산정
- 1개 단위사무당 1개 광역지자체 평균소요비용은 약 7,588만원
- 평균 소요인력은 16개 사무에 대해 1명 정도의 인력 소요

□ 인력지원 방안

○ 총액인건비 반영

-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매년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총액인건비 산정*시(매년 9월) 지방이양사무 인력 반영(인력·비용 조사시 병행)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할 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재위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필요

○ 중앙-지방간 인력 상계

-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인력 소요를 총액인건비에 반영 시키되, 중앙 인력 감축으로 공무원 인력 증원 최대한 지양

□ 이양 자원 확보 방안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의견)

○ 지방이양관리기금 신설

- 내국세의 일정비율(예 : 0.1%)을 계속 적립해서 사무이양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
- 매년 1~2회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비용을 측정하고, 그 비용만큼 적립된 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이양비용 보전

○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사무 지원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 이양사무 재원 규모와의 불일치, 지역간 재원편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 분권교부세에 지방이양 재원 반영

- 매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 재원을 산정하여, 분권교부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분권교부세 한시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전체 이양사업으로 확대

○ 광특회계 內 지방이양계정 신설

-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광특회계 재원은 늘리면서, 지방이양계정 신설로 지방이양사무 지원 상시화
- 각종 전입금 및 부담금 증액 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광특회계 세입·세출원으로 규정

□ 법령 제·개정 사항

○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에 인력과 재정 지원 관련조항 신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대체입법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 의무화
-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안』에 이양사무 행·재정 지원 근거조항 마련

○ 지방이양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분권교부세, 광특회계 등 이양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택된다면 관련 개별법 개정

□ 對 국민 관점에서의 지방이양 문제 고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지방재정 확충 등이 對 국민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 근본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더 근접하고, 對 국민 서비스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목 차

I. 연구배경	1
II. 선행연구사례	3
1. 한국지방정부학회(2009년)	3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년)	8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년)	11
III.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지자체 입장	14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14
2.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입장	15
IV. 행·재정 지원 및 제도화 추진사례	18
1. 행·재정 지원사례	18
가.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및 분권교부세 신설	18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20
다.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지원단 구성·운영	24
2. 제도화 추진사례	25
가. 사무배분 사전심사제도 도입 추진	25
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28
3. 해외사례(프랑스)	29
가. 사무이양을 위한 재정보전근거	29
나.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30
다. 재정보전방식	32
V.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요구	34
1. 지방소비세 인상	34
2. 분권교부세 인상	35
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36
VI. 행·재정 지원 제도화 방안	38
1. 지원체계 구축	38
가. 위원회 차원 인력 및 비용 조사·확인 후 관련부처 통보(제1안)	38
나. 용역사례 활용을 통한 평균 인력 및 비용 산정 후 관련부처 통보(제2안)	40
2. 인력 지원 방안	45
가. 총액인건비 반영	45
나. 중앙-지방간 인력 상계	46
3. 이양 재원 확보 방안(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의견)	47
가. 지방이양관리기금 신설	47
나.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	48
다. 분권교부세에 지방이양 재원 반영	49
라. 광특회계 內 지방이양계정 신설	50
4. 법령 제·개정 사항	52
5. 對 국민 관점에서의 지방이양 문제 고려	54
참고자료	59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61
2.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8
3. 사무배분 사전심사제 관련 발의 법안	71
4.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운영규정	87

I. 연구배경

-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권을 초월하여 국정의 주요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가장 중심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음
 -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이후 2008년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동 특별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0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재정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그러나,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비용보전 없는 사무이양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행·재정적 지원 없이 지방이양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 사무발굴에 소극적·부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실정임
 -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확대로 인한 지자체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무의 재정 보전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이 수차례 연구된 바가 있음**
 - 과거 연구에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제도적으로 지방이양사무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소요 인력과 재정은 분석하여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설정의 미비로 인해 지방이양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이양사무의 행·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자료 작성이 필요하고, 과거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실무행정에 접목해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

- **지방이양사무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의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때 인력과 재정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과거 연구사례를 기반으로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을 기초자료로 활용
 -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인력과 재정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
 -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직접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자 함

-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과 시책을 종합**하고,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방이양을 포함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함

II. 선행연구사례

1. 한국지방정부학회(2009년)

- 2009년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구’는 법령상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범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2009년 당시 확정된 일괄이양 대상사무를 분석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현 기관위임사무 수행시 자치단체 소요 인력을 파악하여 기능사무 일괄이양시 추가 소요인력을 산정하였음
-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소요인력과 소요경비 조사를 위해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음
 - 2009년 상반기 지방이양결정 기관위임사무 67개 기능, 333개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등을 변수로 하여 5개 시·도*, 13개 시·군·구**를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 ** 자치구,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일반시, 도농복합도시, 군
- 소요인력에 대한 조사는 기능별, 직급별, 직군별 업무량의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업무량에 대한 조사는 단위사무별 업무량의 비율을 기입하는 상대적 업무량 기술방식을 취하였음
 - 절대적 업무량을 기술하는 방식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총 업무량을 과대 계상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1년간 총 업무량을 100%라고 했을 경우 해당 단위사무의 업무량 비율을 기입하도록 하는 상대적 업무량 기술 방식을 취하여 업무량 과대 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
 - 하나의 기능을 동일 직군, 동일 직급인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상대 업무량 비율을 합산하여 당해 기능의 전체 업무량으로 계산

사례) A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반직 6급인 김○○가 60%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고, 일반직 6급인 이△△가 35%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다면, A 기능에 대한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업무량은 95%가 되고, 투입 인력은 0.95명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별로 기입한 업무량 비율을 동일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일반직 5급인 박○○가 B 기능을 수행하는데 10%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고, C 기능을 수행하는데 20%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조사표에 기입한 업무량의 총합이 200%가 될 것이고, 이를 다시 1인이 1년간 수행한 총 업무량인 100%로 환산하여 주어야 하므로, B 기능에 투입된 업무량은 5%, C 기능에 투입된 업무량은 10%라고 할 수 있음

□ **소요비용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산정방식에 따라 조사**

- 인건비는 산출된 소요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업무량을 인건비로 환산시에는 직급별·직군별 인건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직급별·직군별 업무량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해 직급별·직군별 인건비를 곱해줌으로써 소요 인건비 추계
- 직급별·직군별 인건비 역시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직급별·직군별 표준호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위임사무의 업무량 비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
 - * 경상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포함
- 경상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총 경상비를 조사표를 통해 조사한 후,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된 인력에 대한 부서 총 인원의 비율을 산출하고, 부서의 총 경상비에 산출된 소요인력을 곱하여 경상비를 추계하였음

$$\text{기관위임사무별 경상비} = \frac{\text{기관위임사무별 업무량}}{100} \times \frac{\text{부서의 총 인원}}{\text{부서별 경상비}}$$

- 사업비는 당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장 주된 실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도별 편차를 고려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결산 자료를 모두 기입하게 하여, 3개년 평균자료를 사업비 추계 자료로 사용하였음

□ 소요인력과 경비 분석을 한 결과

- 시·도별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추계**해 보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621명**(광역시 539, 도 1,082)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총소요 업무량(기초자치단체 포함) 추계 결과】

전국 총계 (제주 제외)	광역시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162,115	53,904	21,852	7,127	7,862	5,555	4,590	3,411	3,507
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8,212	17,179	12,664	6,084	13,991	4,704	13,079	18,962	21,549

* 소요 업무량 100은 연간 소요인력 “1인”으로 환산됨

- 시·도별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경비를 추계**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총 1,140억원**(광역시 442, 도 698)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인건비는 690억원, 경상비는 226억원, 사업비는 224억원으로 조사되었음

【시·도별 총소요 경비(기초자치단체 포함)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전국 총계 (제주 제외)	광역시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114,066	44,216	11,782	6,533	8,889	5,301	4,471	3,532	3,706
도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9,850	14,370	7,896	3,810	8,267	2,969	7,728	12,562	12,243

□ 지방이양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 사무유형별 분석결과를 활용, 이양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인력 보강 또는 중앙인력 이체 등 행정적 지원
-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인상(내국세 총액 0.1%), 한시적 지방 분권교부세 지속 유지 등 현행제도를 활용한 재정 지원과 가칭 “기능이양관리기금(내국세의 일정비율 적립)”을 신설하여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참고 1

업무량 조사표(소요인력 산정)

소속 (경제정책실 에너지정책과) 직급 (공업7급) 성명 (홍 길 동)	
직군 (<u>일반직</u> , 기능직, 소방직, 무기계약근로자) 연락처 (012-345-6789)	
기능(사무)명 :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지식경제부-33)	
위 기능(사무) 수행에 투입된 총 업무량을 100%로 할 경우, 위 기능(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상급기관) 보고(감사에 수반되는 보고는 제외)에 투입된 업무량의 비율	15%
위 기능(사무) 수행에 투입된 총 업무량을 100%로 할 경우, 위 기능(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관련 중앙부처의 감사(확인 점검 포함) 준비 및 수감, 사후 처리에 투입된 업무량의 비율	15%
<p>※ 위 기능(사무)를 포함하여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무명을 아래에 기입한 후 각 사무별 업무량의 비율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업무량 비율의 산정은 '08년 기준 자신이 1년간 수행한 모든 업무의 총량을 100%로 할 경우 각각의 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입하기 바랍니다. 즉, 아래에 기입한 사무별 업무량 비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p>	
위 기능(사무)를 포함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명	업무량 비율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1%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 등록	9%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의 취소 및 정지	10%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징금 부과	10%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태료 부과	10%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련업무	10%
지역에너지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10%
산업체자발적협약 추진	5%
기 타 (위에 적은 사무 이외의 모든 사무)	35%
합 계	100 %

참고 2

사업비 조사표

기능(사무)명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지식경제부-33)
---------	-------------------------------

※ 위 기능(사무)가 예산 사업일 경우에만 아래 표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06년(결산기준)	'07년(결산기준)	'08년(결산기준)
총사업비				
국비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기금	국가기금			
	시도기금			
기타()				

참고 3

경상비 조사표

【부서의 '08년 결산기준 작성】

- ▶ 경상비 예산에 포함되는 경비 = 일반운영비 + 여비 +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 재료비
- ★ 부서의 경상비 총 결산액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비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전체 경상비를 적는 것입니다.

(단위 : 천원)

연 번	기능사무명	담당부서	과장 성명 (연락처)	부서의 '08년 경상비 총 결산액
1	지정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년)

-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법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한국지방정부학회)를 토대로 행·재정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 각 사무별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 연구 사례를 토대로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 추정
 -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방법에 대해 강구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음
- 2009년 한국지방정부학회의 행·재정 소요비용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및 수행활동방식을 분류하여 표준 소요비용을 추정한 후, 이관 확정사무 건수를 고려하여 인력과 소요비용을 추정하였음
 - 2010년 기준 이양확정사무 중 미이양된 1,296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향후 예상되는 행·재정 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지자체의 직접적인 자료 조사에 의한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것은 아님
 - 기존의 선행연구 가운데 한국지방행정학회의 다양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기능분류*와 사무수행방식**으로 사무를 유형화하여 평균적인 단위사무처리 표준비용을 추산하였음
 - * 행정관리, 도시관리, 경제산업, 삶의 질
 - ** 계획수립, 관리, 교육지원, 기반조성, 보호지원, 부과징수, 시정명령, 인허가, 조사검증, 지도감독, 지정
 - 이러한 기능 및 사무수행방식별 평균적인 단위사무처리 표준비용의 추산결과에 입각해서 이관 확정사무의 기능 및 사무수행방식에 따른 유형별 건수를 곱해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였음
 - 분석은 인건비와 경상비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자치단체의 행·재정 소요비용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사무소요비용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수/전체 자치단체 공무원 수)”로 자치단체별 소요비용을 배분하였음

□ 소요인력과 경비 분석을 한 결과

- 시·도별로 이양확정사무 중 미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추계**해 보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2,383명**(광역시 1,331, 도 1,052)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로 미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경비를 추계**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총 6,47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건비는 4,931억원, 경상비는 1,540억원이며, 사업비는 조사하지 않았음

【기능별·활동유형별 소요경비 추산결과】

(단위 : 백만원)

대기능 활동유형	경제산업	도시관리	삶의 질	행정관리	유형별 합계
계획수립	5,627	3,912	23,003	1,552	34,096
관 리	1,813	1,106	20,188	13,976	37,086
교육지원	1,552	4,658	1,642	1,552	9,407
기반조성	7,764	6,211	3,741	6,211	23,930
보호지원	15,529	0	9,317	4,658	29,506
부과징수	2,307	561	5,635	1,552	10,058
시정명령	753	52,410	4,915	0	58,079
인·허가	14,565	55,724	101,051	395	171,737
조사검증	11,321	10,870	21,741	4,658	48,593
지도감독	14,399	1,146	141,253	6,211	163,012
지 정	17,082	6,097	35,886	2,575	61,641
총 계	92,719	142,700	368,379	43,348	647,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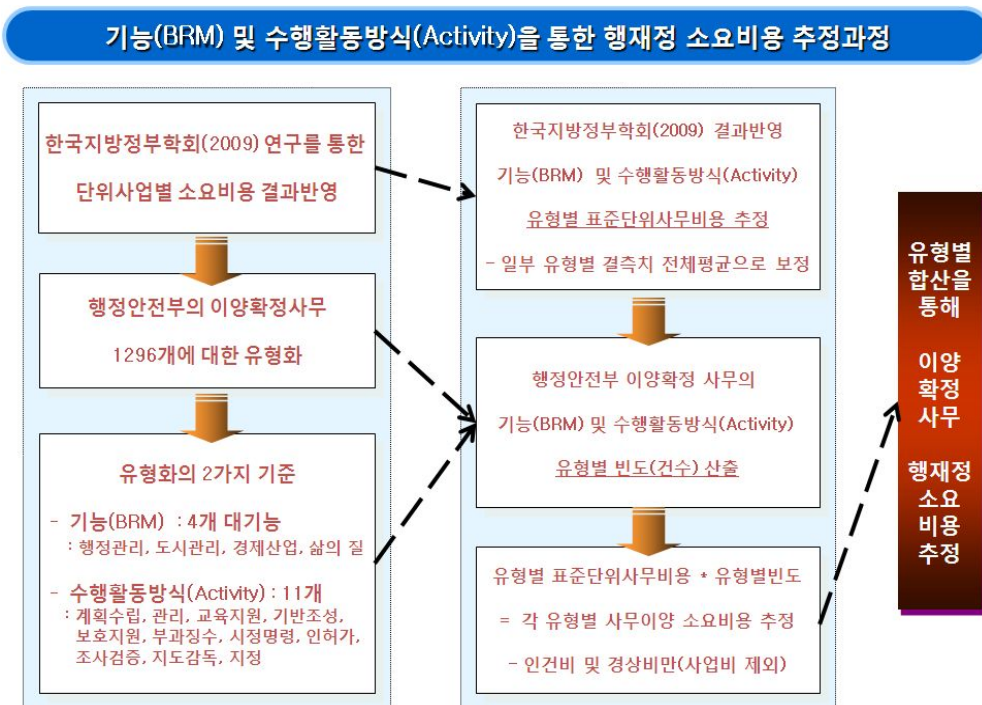
□ 사무의 이양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가적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 내지 정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확대 강화이며, 先분권-後보완이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제임

□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관리기금, 지방소비세 등을 활용한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새로운 제도 개편 없이 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나,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빈번한 법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불교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자체간 재정부담 문제 발생이 우려될 수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국가재원의 추가적 지원이 없이 가능하지만 균형발전, 낙후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할 때, 관련성이 낮은 기능 이양에 대한 지원 한계
- 지방이양사무관리기금 신설은 기금설치 이후 추가적인 제도변경 없이 안정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합의의 어려움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소비세는 이양사무와 관련된 재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지역별 재정력 등을 감안한 지역간 불균형 우려

【유형별 행·재정 소요비용 추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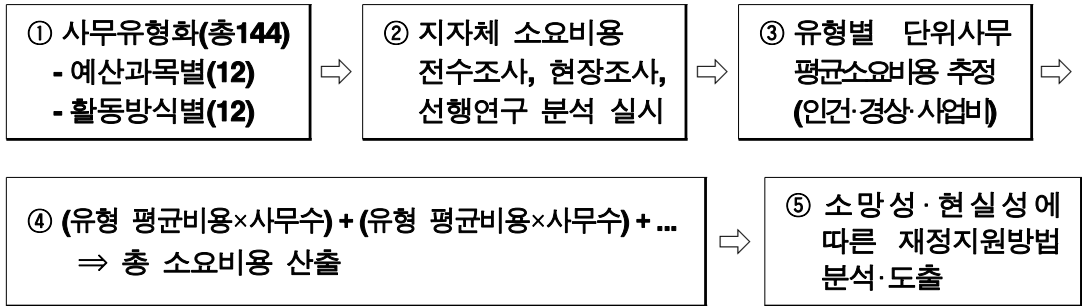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년)

-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분석 및 재정 지원방법 연구’는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양 확정되어 향후 이양예정인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16개 광역시도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좀 더 타당성이 높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 확정되어 향후 이양예정인 사무와 이미 이양되어 운영 중인 사무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행·재정 소요비용을 추정하였음
 - 2011년 기준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 확정하여 향후 이양 예정인 1,262개 사무와 과거 이양되어 운영 중인 1,678건의 사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 ①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통해 단위사업별 소요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전수조사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간처리횟수, 건당처리시간, 담당인력규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됨
 - ② 더불어 이양 확정되어 향후 이양될 1,262건에 대한 사무 및 1,678건(2000~2011.3월까지 지방이양 확정)에 대한 이양사무를 일반회계 예산과목(12개 유형)과 수행활동방식(1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144개 유형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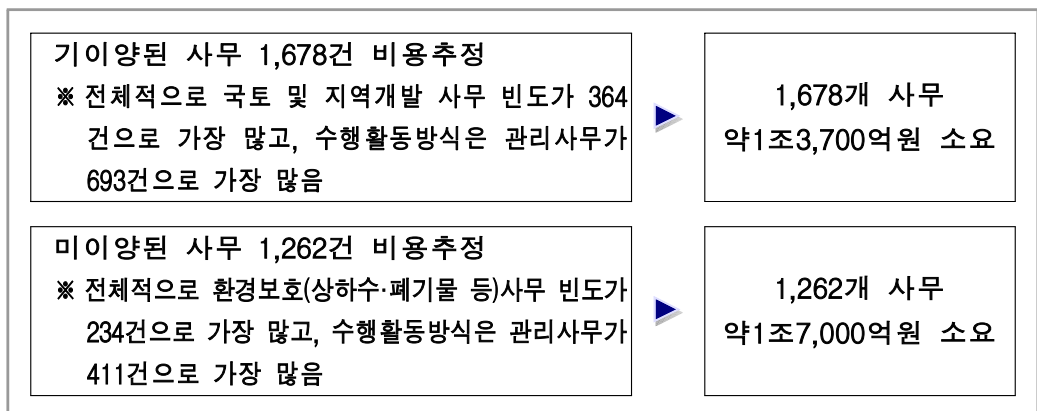
- ③ 일반회계예산과 수행활동방식의 각 유형별 표준단위 사무비용 추정, 이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세분화하여 추정
- ④ 일반회계예산과 수행활동방식의 각 유형별 해당 빈도(건) 산출
- ⑤ 각 유형별 표준단위 사무비용과 해당빈도를 곱하여 예상되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산출
- ⑥ 최종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이와 함께, 직접조사가 이루어진 1,262건의 사무와 관련 인건비, 경상비에 대해서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당인력, 연간처리건수, 건당처리시간 등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실시

【행·재정 비용 연구방법】



□ 행·재정 비용 추정결과

- 기이양된 사무 1,678건은 약 1조 3,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양된 사무 1,262건에 대해서는 약 1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정지원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양도소득세의 단계별 지방세화, 분권교부세 설계,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제시하였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2013년부터 5% 추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 지방소비세율의 일정비율을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액으로 배분하되 배분방식 변경, 지역발전상생기금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원불균형 완화 필요
-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세 전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첫 단계로 이양되는 사무의 총비용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씩 지방세화하는 방안이 있음
-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교부될 수 있고, 재원이 이양사무와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배분율에서 보전 받는 경우 다른 사업, 특히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방교부세 인상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교부세율을 이양사무 비용총액에 비례적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불교부단체가 있으므로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지방소비세가 실현가능성 및 소망성 기준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일정비율을 재정지원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사무이양에 수반된 재정지원 확충방안의 구체적 프로세스 및 지방자치단체 배분은 별도의 연구·분석이 필요함**

- 지원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배분방식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음

Ⅲ.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지자체 입장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 2000년에 설치된 지방이양위원회에서부터 2012년 12월까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건수는 총 3,101건**이며, 현 정부 출범(2008.12월) 이후 1,587건의 사무이양을 확정하였음

- 이양확정 후 법령이 개정되어 완료되기까지는 부처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입법예고, 예산반영, 국회통과 등 복잡한 추진절차 등으로 최소 1~2년 또는 3년 이상 장기간 소요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도별 결정 현황】

(2012. 12월말 현재)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현 정부						
			'00	'01	'02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
이양확정	3,101	1,514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1,587	54	697	481	277	78
이양완료	1,982	1,466	185	175	250	466	53	191	68	78	516	45	336	110	23	2
		1,219	2	92	138	172	204	436	44	131	763	118	81	135	232	197
추진중	1,119	48	-	1	1	12	-	12	12	10	1,071	9	361	371	254	76

- 1) 이양확정 연도를 구분한 지금까지의 법령개정 누적 건수
- 2) 이양확정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에 법령이 개정된 건수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양완료사무에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과 같이 인력과 소요사업비가 뚜렷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시에는 일부 인력과 재정을 보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하는 개별 사무에 대해 제도적으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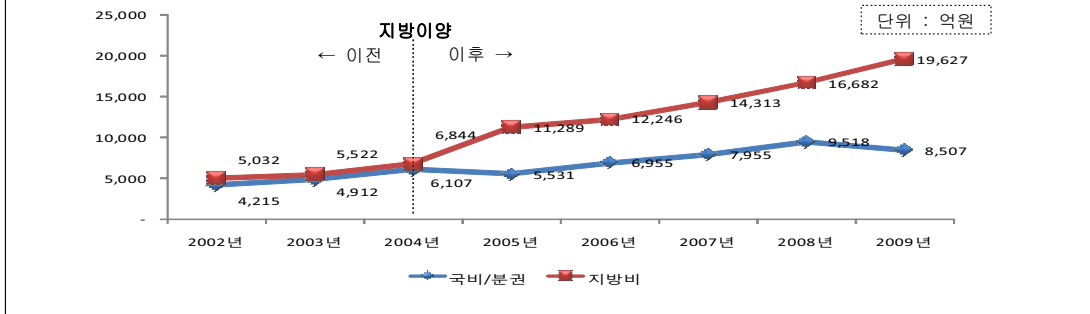
□ 자치사무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양사무의 발굴이 중요한데 인력·재정 지원 미비로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이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발굴한 전체사무 9,833건 중 지자체 건의사무는 347건으로 4%에 불과
- 지방분권 확대를 주장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양사무의 발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입장

- 중앙부처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의지가 거의 없음
 - 지방의 경우 문화·전시시설 과대, 과잉건립,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례들이 주로 규제사무와 관련된 권한으로 재원 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지방교부세 증액,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재정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입장
 - 향후 중앙과 지방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복지비 비중이 지자체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방, 외교·통일 분야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
-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에 사무만 이양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어 사무이양에 소극적인 입장
 - 지자체의 분권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양 받을 수 있는 업무이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인력과 재정의 동반이양이 없이 업무만 늘어난다고 반대하는 경향
 - 권한이나 재원이 있는 실질적인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집행,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단순 업무만 이양
- 특히,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수요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훨씬 초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지방이양 이후 총 사업비는 연평균 약 16.8%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6.9% 증가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23.5%씩 증가
 -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원 확충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사례 발생
 -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 일부사업의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지속 건의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증가 추이



구 분	이양 전			이양 후					연평균 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 전	이양 후
계(A)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18.3	16.8
국비/분권(B) (억 원)	4,215	4,912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20.4	6.9
비중(% (B/A))	45.6	47.1	47.2	32.9	36.2	35.7	36.3	30.2	-	-
지방비(C) (억 원)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16.6	23.5
비중(% (C/A))	54.4	52.9	52.8	67.1	63.8	64.3	63.7	69.8	-	-

※ 이양전은 국비, 이양후는 분권교부세

□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이양사무 수행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이 필요함에도 지원이 없는 사례 발생

- 이양사무 처리부서 등에서 행안부 및 지자체 조직부서에 신설사무 증가분에 대한 인력증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인력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총액인건비 방침으로 지자체 자체 인력확보 한계, 선이양 후보완으로 인한 중앙부처 무관심
- 2010년 8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이양사무 수행에 따라 전문분석 인력과 분석보조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별도 인력 이관이 전무한 사례 발생

□ 취득세 감면,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과 같이 지자체의 동의나 협의 없이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책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보육료 지원 거부와 같은 사태가 생겼음

수산물안전성조사 이양에 따른 인력확보 문제(부산시 사례)

□ 사무위임·이양(농림수산식품부→광역시 지자체) 개요

- 사무 : 국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안전성조사
 - 국내 생산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 2010. 8.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27호)
 - ⇒ 2011. 7월부터 부산시, 경남, 전남 (3개 시·도) 위임
- 2011.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10885호)
 - ⇒ 2012. 7월부터 전 시·도 사무 이양
- 인력지원방침(농수식품부)
 - 국가 위임·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 이관 전무

□ 이양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예상인력

- 소요 예상인력 : 9명 (전문분석 6명, 분석보조 3명)
 - 검사기관 지정기준 의거, 주요 검사항목(3분야)별 최소 3명 인력 소요
 - * 주요 검사항목 : 중금속, 항생물질, 이화학물질 등 (3개 분야)
 - ⇒ 총액인건비제하 조직부서 증원난색

□ 예산지원 감축으로 보조인력 등 채용 한계

-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광역계정에서 50%의 보조율로 지원하고 있으나, '12년 25%감액 편성
 - ⇒ '11년 6억원, '12년 4억5천만원(시도별 1억5천만원 배정)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투자 한계
 - ⇒ 안정적 보조인력 확보시 사업비 부족으로 업무 수행 불가

IV. 행·재정 지원 및 제도화 추진사례

1. 행·재정 지원사례

가.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및 분권교부세 신설

□ 2003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확정

- 13개 부처*, 총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분권교부세 신설('05.1.1)

* 복지·건교·행자·문광·농림·환경·해수·여성·노동부, 산림·문화재·농진청, 보훈처

- 복지분야는 소관 사업 45%(67개), 관련 자원 62.2%(5,959억원)으로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분권교부세의 운용기한은 당초 2005~2009년에서 5년간 연장되어 2014년 까지 운용할 계획임

-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사업의 국고환원을 추진하였으나, 우선 분권교부세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합의('09.9.16)

□ 재원규모는 분권교부세 신설 당시 내국세 총액의 0.83%였으나, 2006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0.94%로 인상되었음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재원규모* (억원)	8,454** (8,454)	10,065 (10,065)	11,053 (11,387)	12,595 (13,784)	12,253 (12,305)	12,872 (13,187)	14,228
법 정 율 (%)	0.83	0.94					

* 당초분(추경포함, 정산분 미포함), ()내는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 포함 최종 교부액

** 이양금액(9,581억원)의 88.2%, 부족분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에서 충당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개편 내용

□ 추진배경

- '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시, 복지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일부의 국고환원을 추진하였으나,
 - 우선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 연장('10~'14년)하고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기로 합의 ('09.9.16, VIP 보고)
- *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보전, 분권교부세 개편 등

□ 개편내용

-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 복지분야 활용
 - 경상적수요의 유사중복, 계획완료·목적달성 사업 등 통·폐합
 - 비경상적수요의 일반수요 폐지 및 특정수요 재원규모 축소

□ 추진경과

- 분권교부세 149개 대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 마련 ('10.5월)
- 개별부처(복지·국토부 등 9개 부처) 및 총리실 협의 진행 (7~10월)
- 시도 기획관리실장(9.28) 및 전 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10.7)
- BH에 추진경과 및 개편방안 보고 (행정자치비서관, 10.12)
- 총리실 총괄정책관 주관으로 부처 최종합의 도출 (10.13)

□ 개편결과

- 149개 사업 → 90개 사업(복지 : 67→52, 비복지 : 82→38)
- 510억원(복지 129, 비복지 381) 확보,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분야 투입
- 복지분야의 재원비중은 3.7%P 증가 (70.3→74.0%)
 - ('10년) 9,046억원 → ('11년) 1조 530억원(내국세 증가 포함)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그간 **중복 수행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일부 분야에서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창구가 이원화됨에 따른 불편과 부담 발생
 -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이전 정부의 미완의 과제였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 결정하였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및 지방이관은 매우 오랜 기간 논의되온 해묵은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음
 -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 진단안 등의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참여정부 시기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별도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전문가·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100여 차례 개최한 바도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의구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이관 검토대상 8개 분야를 선정하였음
 - 정비대상인 8개 분야는 국도·하천, 노동, 보훈, 산림, 식·의약품, 중소기업, 해양·항만, 환경 분야로 전국적 통일성 및 정책 집행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총 195개 기관, 11,048명('09. 6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4월에 걸쳐 시·도 합동작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단체, 노조,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2008년 7월 舊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전략 보고회의에서 확정·발표**하였음

- 동 정비안에 따르면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업무를 우선 이관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2단계로 기구인력 효율화 및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3개) : 시설관리,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 이관
·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5개) : 광역화 등 기구인력 효율화 및 규제합리화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의 정비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적 사무로 이루어졌으며,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중심의 **26개 법령**(11개 법률 및 15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력 208명, 예산 3,969억원을 이관**하였음

- 국도·하천 분야는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의 공사, 점·사용 인허가, 7대 하천(안성천, 형산강, 태화강,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의 공사·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되, 광역적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한 국도·하천계획 등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
- 해양·항만 분야는 총 29개 무역항 중 14개 항만을 국가관리항으로 존치하고, 15개 무역항의 개발·운영, 해양환경 감시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관하되, 광역적 조정 및 항만계획, 해사안전 등 계획기능과 안전 관리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음
- 식·의약품 분야는 현지 집행적 성격의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으로 일원화하고, 식약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전문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적·광역적 차원의 식품위해 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음

1단계 3개 분야 특행기관 이관분야

국도·하천 분야

- 지방위임 : 간선기능 및 광역성 고려, 국도·하천 중 일부구간
 -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25.4% : 총 11,503km 중 2,918.7km)의 공사, 점·사용 인·허가 등 이관
 - 7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및 관리기능 위임(5대하천 제외)
 - * 이관 7대 하천 : 안성천, 형산강, 태화강, 삼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 제외 5대 하천 :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 국가수행 : 국도·하천계획 및 건설품질관리기능 등
 - ※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신·개축, 토지형질변경) 권한은 4대강 사업 및 향후 7대 하천 정비사업 등을 고려, 현행유지

해양·항만 분야

- 지방위임 : 14개 항만을 제외한 항만관리(항만개발, 공유수면관리 등)
 - (이관기준) 국가 경제적 중요도, 복수자치단체 관할,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 (이관대상) 29개 무역항 중 14개 항만*을 제외한 무역항 및 연안항 관리 지방이관
 - * (14개 국가관리항만) 부산 인천 경인 평택 당진 군산 광양 울산 포항 목포 미산 동해목호 대산 여수·장항 → 서울·대전·대구·충북·제주 제외 광역단체별 최소 1개
- 국가수행 : 항만계획, 해사안전, 선원·선박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기능 등

식·의약품 분야

- 지방위임 : 현지 집행업무인 식·의약품 지도·단속 업무(식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시험분석 기능 등)
- 국가수행 : 수입식품 관리 및 HACCP, GMP 등 식·의약품 전문 품질관리 기능
 - ※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참고 7

분야별 인력·재원 이관규모

□ 인력 이관

○ 국도·하천 분야 : 총 48명, 8개 도 4~9명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연장(km)	2918.7	156.5	499.6	231.4	329.1	258.7	599.8	469.2	374.4
인력(명)	48	5	9	5	6	5	8	6	4

○ 해양·항만 분야 : 총 59명, 8개 시·도 1~23명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이관구역항	15	-	-	2	1	6	-	4	2
연안항		1	2	2	10	1	3	1	5
인력(명)	59	-	-	3	11	23	1	17	4

○ 식·의약품 분야 : 총 101명, 16개 시·도 3~9명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력(명)	101	9	6	6	6	6	7	5	9	6	7	6	6	6	6	7	3

□ 재원·장비 이관

○ 국도·하천 분야 : (하천) 전체 51,076억 중 710억*(1.4%)

(국도) 전체 8,432억 중 1,246억(14.8%), 트럭26대 등

* 710억은 7대강 공사의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14억) 포함 금액임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카고트럭	8	1	2	1	1	1	1	1	-
덤프트럭	18	2	3	2	2	2	3	3	1
제설삽날	19	2	3	2	2	2	3	3	2
습염살포기	19	2	3	2	2	2	3	3	2

○ 해양·항만 분야 : 전체 18,592억 중 1,964억(10.6%), 관공선 6대

지자체명	선명	총톤수	승선원	배치항만
강원	속초해양	30톤	4명	속초항
전남	해양 3	30톤	3명	완도항
제주	제주917	17톤	3명	제주항
경남	경남912	40톤	3명	통영항
	경남915	22톤	3명	사천항
	경남916	18톤	2명	거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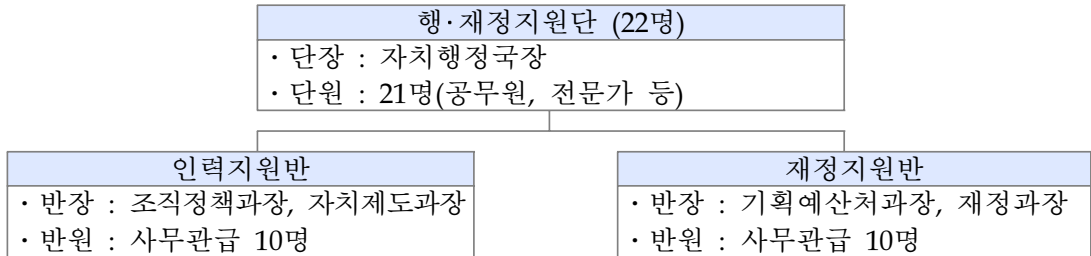
○ 식·의약품 분야 : 총 49억(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시험장비 12대*

* 자치단체별 장비 배분 : 이관업무량 및 기존 자치단체 장비 보유현황 고려 → 울산 및 충남 각 3대, 광주·강원·충북·경남·전남·제주 각 1대

다.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지원단 구성·운영

- '00. 8. 1자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음
- '00. 11. 30자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중앙 및 지방의 국·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행·재정지원단」을 구성하였음
- 「행·재정지원단」은 이양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분석, 지원범위와 방법 등 협의·조정, 지원상황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행·재정지원단 기구표】



- 지원단 운영을 통해 인력·재정 수요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 지원을 하였음
- 농림부 종자관리소 사무, 농림부 수리계 조직·운영 등 5개 사무에 대해 인력 220명, 재정 185억원을 지원하였음
- 다만, 그동안 이양된 사무들은 대부분 기 위임되어 시행중인 사무이거나 인·허가 관련 사무들이 많아 행·재정 수요가 경미하여 개별적 수요를 산출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개별사무별 지원사례 (7개 사무, 인력 247명, 재정 185억원) >

(단위 : 백만원, 명)

부처별	기능명	재정 지원 (연도별)							인력 지원
		계	'01	'02	'03	'04	'05	'06	
계		18,524	2,014	3,822	3,382	4,193	5,023	90	247
농수산	종자관리소이관	6,708	2,014	1,090	424	1,195	1,985	사업종료	50
	수리계 조직·운영	10,924	-	2,050	2,958	2,958	2,958	분권교부세율 조정시 포함	-
교과부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고시	32	-	32	-	-	-	-	-
환경부	공단내 배출업소단속업무위임	650	-	650	-	-	-	-	170
	먹는샘물 영업관련	210	-	-	-	40	80	90	-
방통위	정보통신공사사업사용전검사	-	-	-	-	-	-	-	21
국토해양	자동차책임보험사무	-	-	-	-	-	-	-	6

2. 제도화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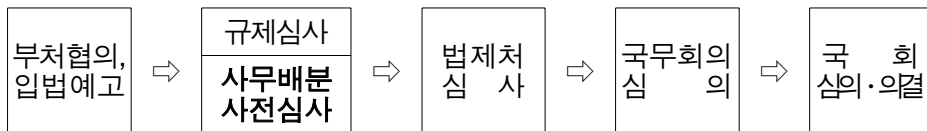
가. 사무배분 사전심사제도 도입 추진

□ 2005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입법과정부터 적절한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무배분 사전심사제』 도입 제안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사무배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입법과정에서 중앙부처 위주로 사무를 배분
- 입법이후 불합리한 사무배분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을 하는 사후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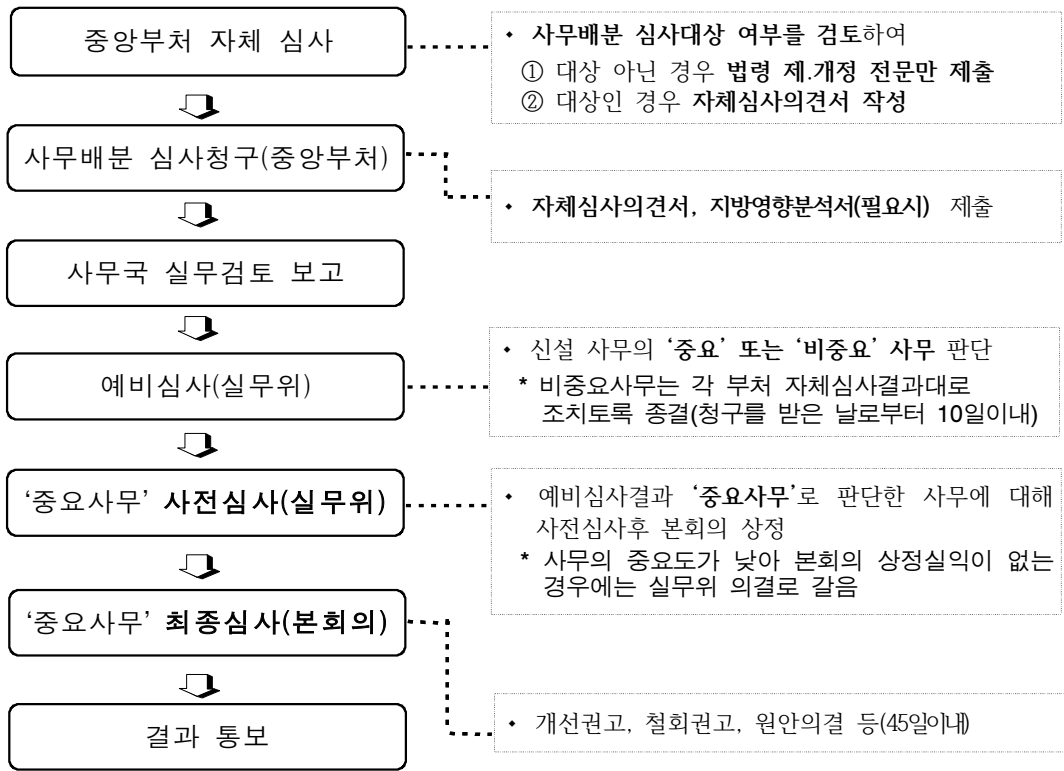
□ 2007년 유기준 국회의원이 사무배분 사전심사제를 포함하는 『지방이양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중앙부처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이 포함된 법령의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되도록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음
- 사무배분사전심사는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에 규제심사 기간 중 동시에 실시하고, 심사요청일로부터 결과통보까지는 45일 이내, 불가피할 경우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



- 중점 심사유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관사무를 구분, 배분, 신설, 변경 및 폐지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심사 요청

【사무배분 사전심사 절차】



□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

- 입법은 각 부처의 소관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소관부처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사전 심사는 그 소관 부처의 고유업무인 정책까지 심사하는 것이 되어 각 부처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
- 법제처의 법령 심사권과 충돌·중복 우려가 있으며, 법제업무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사전심사에 대한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책 사전 검토를 위해 적극 추진되었으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음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促進등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261
-----------	------

발의연월일 : 2007. 3. 21.

발 의 자 : 유기준 · 이인기 · 안상수
정갑윤 · 김정권 · 이해봉
김영덕 · 배일도 · 김충환
공성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1999년 8월 30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이 법을 운영한 결과,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부족으로 쉽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무심사에만 한정되어 현행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중앙부처 위주로 제·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그 결과 반분권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무배분체계를 분권이념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또한 사무의 지방이양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주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이양 확정사무가 법령 개정 등 실행화 되기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소관부처의 관심 부족으로 지방분권의 조기 가시화 및 분권 체감화에 한계가 있어 **행정권한의 배분이 확정된 사무를 일괄 법제화할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2004년 정부(행정자치부)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접수가 거부되었음**

- 국회법상 상임위의 소관주의 위배(법안 심의권 제약) 등을 이유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또는 개별법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음
- 2010년에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관련 국회(의안과)와 협의를 하였으나 단일법률 심사관례에 따라 국회는 일괄입법 지양 입장을 고수하였음
- 『지방일괄이양법안』 *을 권경석 국회의원에게 제출('10.12.10)하여 의원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발의되지는 못했음

* '10.12.31 기준 21개 부처(12부, 2위원회, 7청), 180개 법률, 955개 사무

□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1. 6. 27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권경석 국회의원 등의 주도로 국회에 접수되었음

- 국회의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 부족으로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논의가 중단되었음

* 권경석 의원외 72인 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책임성 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심사·처리, 지역균형발전 관련 시책 추진 및 점검 등 논의 주장

□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19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지방분권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신동우의원, '12.8.20)

3. 해외사례(프랑스)

가. 사무이양을 위한 재정보전근거

- 프랑스는 지방자치 실시 다음 해인 1983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하고, 도시 계획, 주택, 대중교통, 교육설비 건설 및 관리운영, 항구설치, 해상교통 분야 등의 기능을 이양하였음
 - 이양에 따른 행정수단(재원, 인력, 행정조직)의 재배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
- 프랑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 이양으로부터 발생된 비용의 모든 순증가액에 대하여 자원의 이전을 통해서 보전해야 한다. 이들 이전된 자원은 권한이양한 날로부터 현재에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해야 하며 총괄경상교부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정보전 방법들에 대해서는 1983년 사무배분법의 제3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들 원칙은 제94조에 정해져 있음
 - 자치단체마다 재정결산을 통한 비용감정, 이 목적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 재정보전의 전액보전 등이며, 이들 재정보전 방법의 가장 추진력이 되는 것이 예산교부금과 이전세 수입이었음
- 사무배분법 제5조는 “사무이양과 함께 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또 1983년 사무배분법 제7조에서는 “모든 행정기능(사무)의 이양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기관의 이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예시하였음
 - 사무배분법 제19조에는 사무이양에 따른 재산 및 재정지원을 명문화 하여, 행정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원의 보전은 이양된 권한과 새로운 권한의 배분에 따라 이루어졌음
- 매년 지출비용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지출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총괄안을 세우고, 이 결과에 따라서 세제수입과 사무이전일반교부금으로 재정지원을 하였음
 - 이러한 모든 재정 이전에 관한 결과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평가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나.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 1983년 1월 사무배분법에 의해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보전원칙이 제정되었고,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이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사무이양과 이와 관련된 재원 등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도 담당
 - 사무배분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사무이양평가위원회는 1983년 3월 10일 정부시행령에 그 조직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
 - 국회는 1995년 국토개발지침법 제66조를 통하여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로 하여금 1996년부터 매년 국가예산 승인을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관련비용에 관한 결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은 수상이 임명
 - 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시장협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 대표 8명, 도자치단체장협의회로부터 선출된 도자치단체 대표 4명, 광역도자치단체장협의회로부터 선출된 광역도자치단체 대표 4명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대리자를 지명해 둠
 - 위원회 구성원이 임기만료 등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사전에 선출되었던 대리자로 3개월 내에 교체하여야 함
-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의장의 소환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고, 정족수 구성을 위하여 1회에 걸쳐 다시 회의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문서를 통하여 하며, 의장의 사인이 요구되고, 결정사항은 각 위원회 임원, 관계부처 등에 통지됨
 -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2명의 보고위원을 두고 있는데 내무부와 예산담당 부처인 예산부 등 2개 중앙부처의 대표가 사무이양비용평가에 관한 보고를 수행함

□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재정 지원과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배분 결과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평가방법,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의 결과에 의하여 비용발생이 야기 되는 관계부처 시행령 시안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음

□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은

- ① 사무이양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 지출하였던 지출내역과 총액에 관한 사항
- ② 사무이양에 따른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출내역과 총액
- ③ 각 자치단체의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이양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양전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과거에 국가가 지출하였던 총액과 사무이양을 예정하고 있는 정부시행령에 나타난 총액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사항 등을 검사
- ④ 비용평가위원회는 관계장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⑤ 관계부처 시행령 시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내로 의견을 제시해야 함

□ 비용평가위원회는 실제 사무이양이 시작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1996년 8월에 제출하였음

- 위원회는 1차 보고서 내용에서 사무이양에 따른 자원보전이 사무배분법 등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볼 때 대체로 일치하였다고 평가
- 그러나 이후 새로운 사무이양(공적부조, 교육시설 확충 등)에 의한 재정 부담이 점차 자치단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비용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였음

다. 재정보전방식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권한의 이전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동등한 재원을 보조해야 하며, 이러한 재원은 행정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진 날부터 국가가 집행했던 비용과 똑같은 총액으로 보전해야 함
 - 이양된 행정권한에 대하여 국가가 법규를 통하여 수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의 증가에 대한 사무이양일반교부금의 증액으로 보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보전을 해주어야 함
 -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 “이양에 따른 보전재원을 위하여 세제수입의 이전으로 1/2을 재정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사무이전일반교부금에 포함된 예산지원금의 이전”으로 보충하게 됨
- 사무배분법 제95조에 자치분권 일반교부금 외에도 세수입으로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한의 이양이 한창일 때, 이전세수입에 의해서 적어도 재원의 반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예정하였음
 - 제99조에 이전세 수입의 내용을 보면, 레지옹광역도자치단체에는 일반세법 제968조에 명시된 자동차 및 기타 동력기관에 대한 등록허가세를 이전하고,
 - 데빠르뜨망도자치단체에는 동력차에 대한 차등세와 일반세법 제1007조에서 1009조에 명시된 자동차세법분류에 의한 16마력 이상의 특별차량에 대한 특정세, 등록세, 부동산 이전에 대한 지가광고세 등을 이전하였음
 - 세제수입의 이전은 꼬문과의 관련이 없고, 주로 자동차등록세로서 레지옹광역도에 이전하고 있으며, 자동차인지세와 대부분의 취득이전세는 데빠르뜨망도자치단체에 이전되었으며, 각 자치단체들이 이전된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결정함

- 사무이양일반교부금은 사무배분법 제96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국가의 예산항목에는 내무부의 예산서에 등록되어 있고, 총액은 매년 재정법에 의해서 금액의 배분방식을 세밀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이전일반교부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순수입 정도에 따라서 산출되어 보장받고 있으며,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상항목에 계정되어 있음
 - 행정권한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처음 3년 동안 이 교부금은 권한이양에 의한 지출비용의 전체를 보전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세제수입에 의한 보전은 하지 않았음
 - 이양에 따른 이전지출비용은 다음 해의 교부금 산정을 위해서 같은 해의 총괄경상교부금의 진행 비율과 동일한 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산정되어 보전하도록 하였음
 - 사무이전일반교부금은 전 자치단체 총괄경상교부금의 상승비율과 마찬가지로 발전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사무배분이 시작된 뒤부터 4년까지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사무이양일반교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되어 사무배분 이후 3년 동안인 1986년까지 사무이양이 이루어지는 추세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리듬으로 총괄경상교부금의 내역으로 분류되었음
 - 그러나 사무이양이 된 1990년부터 실제로 이양된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보전을 받은 총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전받은 지방세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임
 - 사무이양의 재정보전체계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먼저, 초기에 사무이양과 함께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어 왔음
- ※ 해외사례(프랑스)는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 기준개발과 지원체계 구축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췌

V.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요구

1. 지방소비세 인상

□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

-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68조원)을 지방세로 전환하였으며,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안분시 민간최종 소비지출에 수도권, 광역시, 도 3단계로 구분하여 100부터 300까지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권역별 소비 가중치 : 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 200%/비수도권 도 300%

□ 2004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증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1단계로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로 인상하고,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인상 추진

□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으므로 우선 세율 인상 후 배분방식은 개선 모색

- 일부 道에서는 재정력이 높은 수도권 등에 지방소비세가 많이 지원된 반면, 재정력이 취약한 시·도에는 적게 지원되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
-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도입 당시에는 3조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초과재원 발생 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지역간 갈등 소지가 있어 상생기금 출연한도액(3조원)을 법령에 명시해 달라고 주장

※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방재정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

2. 분권교부세 인상

□ 2004년 지방으로 이양된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복지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소폭 증가에 그쳐 지역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

- 지방이양된 재원(분권교부세)의 증가가 사업의 수요증가에 못 미침으로써 결국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원 확충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national minimum)에 해당하거나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07.10월 국회 감사청구에 의거 감사 실시('07.10.24~11.20) 후, '08.4월 「노인·아동·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 국고환원 및 교부세율 인상검토」 권고 처분

□ 분권교부세 제도 시행 이후 지방비 부담과 함께 향후 복지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0.94%에서 2% 이상으로 확대

- 분권교부세 증가를 통한 전체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도 인상(19.24%→21.24%)

※ 분권교부세 폐지('15.1.1 이후)를 대비하여 사회복지 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이 뚜렷하고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환원

□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복지정책 확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혜자로 지방비가 가중되고 수도권내 여건변화에 따른 교부세의 역차별적 산정 개선을 위해 분권교부세 지원 중단 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주장

- 사회복지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 및 사회복지수요를 별도 산정 후 지방비 의무부담을 수반하지 않도록 하는 교부세 제도임

*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와 복지재원의 관리주체 동일화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내국세의 1.43% 재원)을 주장한 바 있음

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현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로 과세하고 있음

○ 부가세 방식으로 운용되다 보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세율 조정 등에 따라 지방세입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함

* 국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면 단순히 세율만 곱하여 세액 산정

○ 과세표준을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으로 규정하여 납세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누락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누락

□ 국세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납부방식을 유지하면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자 추가 불편이 없고, 전자신고, 세액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납세협력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자치단체의 조세정책수단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재정분권을 위한 독립과세 방식으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이양이 가능함

○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

지방소득세 개요

□ 도입 현황

- 2010년 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종 전 (~'09)		현 재 ('10~)	
주민세	소득할	소득분 (7.4조)	지방소득세 (8.1조)
	균등할	종업원분 (0.7조)	
사업소세	종업원할	균등분 (0.09조)	주민세 (0.21조)
	재산할	재산분 (0.13조)	

< 부처협의안 ('09.9,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

- (도입방안)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과표와 세율은 3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보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향후 3년간 합리적인 보완 방안 마련
 - * TF는 총리실 주관, 행안부·재정부·국세청·자치단체 등 참여
 - 해외의 지방소득세 운영 사례 등을 운영하고, 납세자 불편 및 세정비용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심층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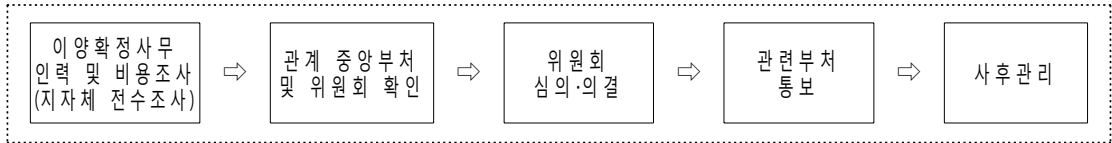
□ 과세 체계

- (납세의무자) 소득분 :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종업원분 : 사업주
- (과세표준) 소득분 : 소득·법인세액, 종업원분 : 급여총액
- (세율) 소득분 :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 0.5%
 - ※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
- (납세지) 주소지·근무지·지급지(소득세), 본점소재지(법인세)
- (과세방식) 신고납부 원칙
 - 소득세분 :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시군구에 납부
 - 법인세분 : 시군구에 각각 신고 납부

Ⅵ. 행·재정 지원 제도화 방안

1. 지원체계 구축

가. 위원회 차원 인력 및 비용 조사확인 후 관련부처 통보(제1안)



□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사전 구축을 통해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사무이양 확정시 사무와 재원을 동시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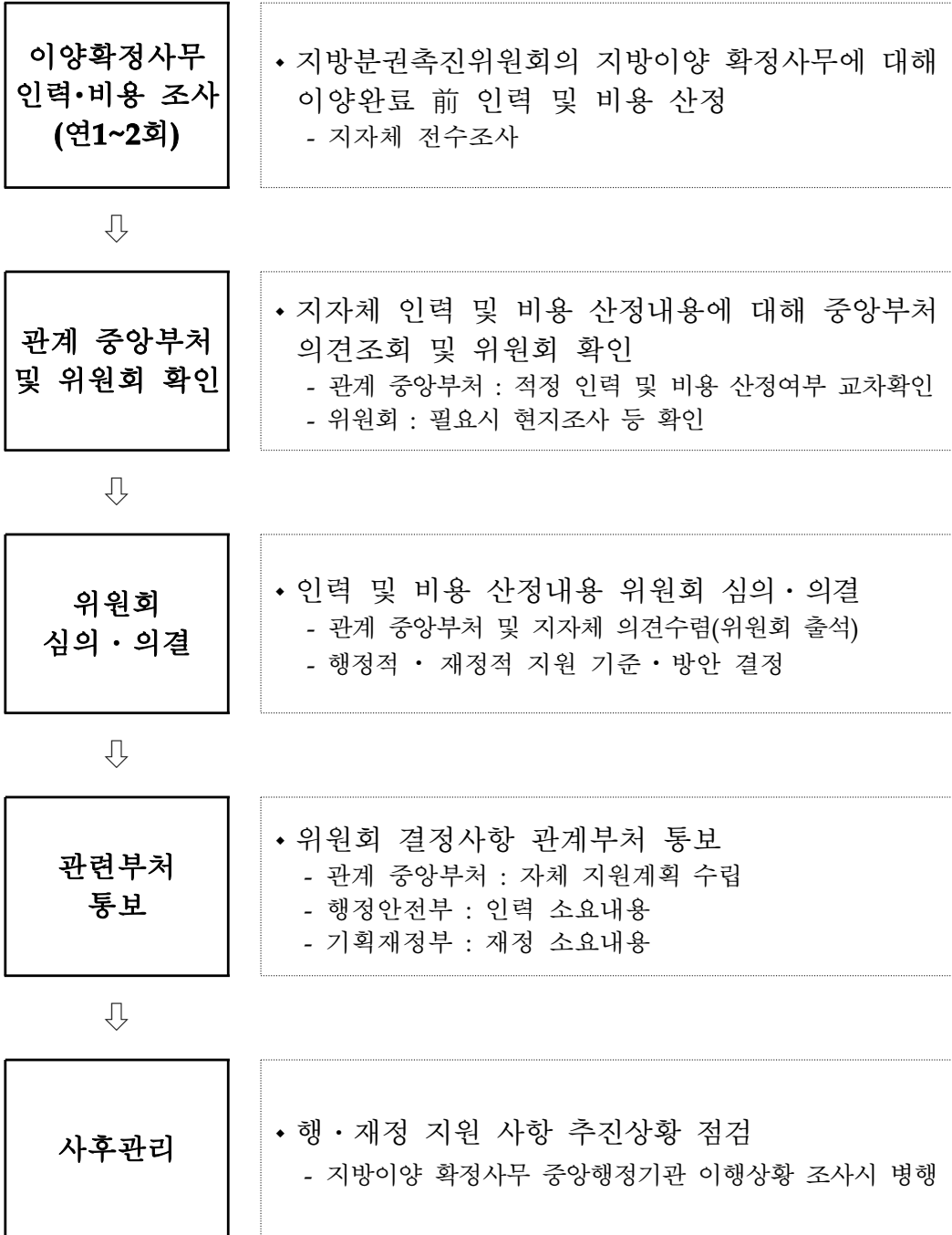
- 위원회의 사무이양 결정시마다 소요 인력과 재원을 조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양확정사무에 대해 연1~2회 인력과 비용을 조사하여 사무이양과 함께 행·재정 지원 병행
- 인력과 비용 산정은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교차확인과 위원회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인력과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확인
- 확정된 인력과 비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결정사항을 이양 관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인력), 기획재정부(재정)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2회 실시하는 지방이양 확정사무 중앙행정기관 이행상황 점검시 이양진행상황, 인력 및 비용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 이양확정사무의 인력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거나, 별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 관련부처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재정 부분은 관련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거나, 지방소비세, 분권교부세, 광특회계 등을 활용해서 이양사무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또는 대체입법*)』에 사무이양 확정시 사무와 재원을 동시 이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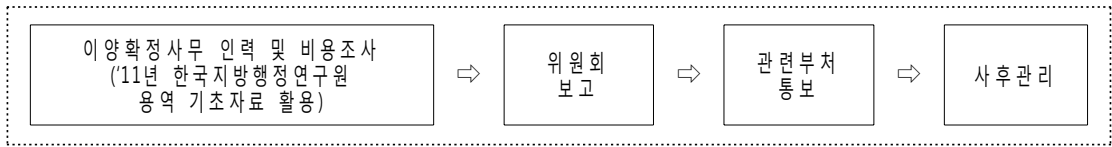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13. 5월까지의 한시입법이므로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을시 대체입법 추진 필요

이양확정사무 인력·재정 지원 흐름도



※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이양 관련 별도 자원 확보 추진

나. 용역사례 활용을 통한 평균 인력 및 비용 산정 후 관련부처 통보(제2안)



- 이양확정사무에 대해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단위사무당 평균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여, 지방이양 사무에 적용하고 사무가 이양될 때마다 지원하도록 제도화**
 - 단위사무당 평균 인력과 비용 산정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전문 용역 보고서에서 산출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전수 조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
- 2011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중양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법 연구』에 따르면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확정 후 미이양된 사무 1,262건에 대한 비용은 조사표에 의해 지자체의 전수조사결과 1개 사무당 단위 인건비는 6,139만원, 단위 경상비는 9억 7,531만원, 단위 사업비 1억 7,75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약 6,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개 사무당 단위 인건비가 6,139만원이므로 1개 단위사무당 평균 1명의 공무원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지자체마다 총액인건비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이고, 평균 인건비의 정확한 산출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함
-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이양확정 단위사무당 평균 비용을 산정하면 12억 1,421만원(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단위사무당 평균 인력은 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확정하는 사무에 대해 1개 단위 사무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과 평균 인력을 반영

※ 1개 단위사무당 평균 소요비용 및 소요인력(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평균 소요비용 : 12억 1,421억원
 - 인건비 6,139억원, 경상비 9억 7,531억원, 사업비 1억 7,751억원
- ▶ 평균 소요인력 : 1명(공무원 평균인건비/1개 사무당 단위 인건비)

-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한 1개 단위사무당 평균 비용과 평균 인력은 16개 시·도의 총합을 나타낸 것이므로 16개 시·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 1개 단위사무당 1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소요비용(전체비용/16)은 약 7,588만원 정도인 것으로 산출할 수 있음
 - 평균 소요인력은 16개 사무에 대해 1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향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양확정사무 건수의 총 비용과 인력을 합산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단위 사무당 산출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년이나 2년 단위로 평균 소요비용과 평균 인력을 재산정해서 반영
 - 전문연구기관에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비용과 인력을 산정하고, 위원회에서 중앙부처,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증

- 인력 및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제도적인 장치는 사무와 재원의 동시 이양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 지방이양 관련 별도 예산 지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참고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년)의 단위사무당 소요비용 추정자료

① 1,262건 사무의 조사표 근거 단위인건비 추정(단위 : 만원)

1,262건 사무(전체) 평균-조사표 근거 단위 인건비(만원)		수행활동방식(단위사무 유형화)												평균	
구분	계획 수립	관리	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호 지원	부과 징수	시정 명령	인허 가	조사 검증	지도 감독	지도 단속	지정	기타		
일반 회계 예산 과목 (기능 명 유형 화)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인 방위)		8,091	10,538	11,215	10,503	10,792		9,498	9,040			15,253		9,823
	과학기술(과학기 술 일반)		3,788		1,659		4,051	3,752	4,625	2,597					3,670
	교육(유아 및 초등교육, 평생-직업교육)	9,762	25,581	2,325	4,302		1,825	2,651	3,118	5,116	5,300		4,647		11,143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10,400	5,315		8,957	11,338	4,110	4,902	5,140	5,951	7,545	1,125	9,598		6,145
	농림해양수산(농 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5,831	6,586	7,867	10,089	10,565	7,466	4,890	6,561	12,683	4,842		8,423		7,224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10,900	8,034				6,206			1,748				11,747	7,589
	보건(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8,788	5,965	5,959	5,091		4,897	5,146	6,430	7,731	6,883		7,844		6,085
	사회복지(기초생 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호, 주택)	5,586	7,845	8,609	9,094	6,107	1,940	3,372	4,301	4,703	4,335		6,542		6,171
	산업 및 중소기업(산업금 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5,569	4,902	6,525	6,286	15,271	3,646	4,846	5,193	4,945	5,600		5,020	7,781	5,189
	수송 및 교통(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7,573	6,468	8,294	3,781		4,121	4,964	4,824	7,183	3,081		3,877		5,443
일반공공행정(입 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 정)		6,835	6,718	9,871		7,264		16,575	6,975	9,111		12,240		9,102	
환경보호(상하수 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3,146	3,115	5,084	4,752	8,704	3,185	3,455	3,058	3,958			3,502		3,442	
평균	7,978	6,844	7,258	6,631	10,349	4,894	4,316	5,392	6,570	5,356	1,125	6,952	7,781	6,139	

② 1,262건 사무의 조사표 근거 단위경상비 추정(단위 : 만원)

1,262건 사무(전체) 평균-조사표 근거 단위 경상비(만원)		수행활동방식(단위사무 유형화)											평균		
구분	계획 수립	관리	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호 지원	부과 징수	시정 명령	인허 가	조사 검증	지도 감독	지도 단속	지정		기타	
일반 회계 예산 과목 (기능 명 유형 화)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민 방위)		37,075	27,005	142,483	115,602	10,989		48,508	22,164			429,947	73,779	
	과학기술(과학기술 일반)		5,873		6,174		5,797	6,006	5,801	6,983				5,964	
	교육(유아 및 초등교육, 평생·직업교육)	383,880	362,282	13,398	195,671		5,848	9,331	86,969	17,469	8,262		796,345	319,864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22,853	33,063		37,126	13,683	27,181	31,679	43,774	36,566	11,544	9,639	53,151	33,815	
	농림해양수산(농 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21,987	22,308	42,221	36,167	45,965	40,205	19,427	23,921	29,550	17,711		39,367	28,153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15,065	17,926				17,024			12,542				18,070	17,217
	보건(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17,271	18,107	19,487	5,504		16,343	19,739	21,829	21,408	21,682		45,793	20,439	
	사회복지(기초생 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422,965	79,943	22,236	562,675	413,669	8,960	11,613	12,935	312,345	233,138		9,887	160,506	
	산업 및 중소기업(산업금 용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12,689	415,693	14,118	2,107,287	10,376	10,498	10,476	1,799,751	11,961	16,100		9,791	13,188	593,472
	수송 및 교통(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20,172	11,997	14,061	15,198		11,611	12,265	9,687	9,369	12,022		26,715	12,982	
	일반공공행정(입 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 정)		131,199	10,144	12,482		10,976		52,017	10,669	70,572		31,438	67,702	
환경보호(상하수 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19,700	61,169	13,113	18,013	34,354	16,842	16,498	14,337	14,992			17,076	30,320		
평균	113,409	78,511	20,110	307,752	78,772	21,133	17,483	228,698	29,226	52,173	9,639	147,069	13,188	97,531	

③ 1,262건 사무의 조사표 근거 단위사업비 추정(단위 : 만원)

1,262건 사무(전체) 평균-조사표 근거 단위 사업비(만원)		수행활동방식(단위사무 유형화)												평균		
구분	계획 수립	관리	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호 지원	부과 징수	시정 명령	인허 가	조사 검증	지도 감독	지도 단속	지정	기타			
일반회계 예산과목 (기능 영역 유형화)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민방 위)		566	3,950	76,241	78,546	0		0	910			0		28,297	
	과학기술(과학기술 일반)		2,774		3,069		2,618	2,416	3,207	5,613					2,987	
	교육(유아 및 초등교육, 평생·직업교육)	197,413	120,688	227	30,024		0	217	2,647	12,848	25		20,789		61,893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37,986	19,572		13,187	1,896	1,161	2,121	2,663	827	16	1,667	1,254		11,591	
	농림해양수산(농업· 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34	14,164	8,473	4,201	99,702	239	19,886	382	3,938	27,502		117,723		24,775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431	308				243			716				381		349
	보건(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5,540	3,812	823	2,146		3,317	2,330	4,209	4,619	1,008		18,733		4,483	
	사회복지(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3,709	4,361	11,100	32,081	25,716	0	238	12	4,059	718		14,812		7,298	
	산업 및 중소기업(산업금융 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230,667	9,748	2,364	108,751	71,614	16	479	19,388	14,531	0		36,588	200	27,212	
	수송 및 교통(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11,514	7,685	6,069	165,024		381	407	27,132	722	140		176		16,396	
	일반공공행정(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지원, 재정금융,일반행정)		3,195	229	25		28		43,135	127	5		136,082		18,632	
환경보호(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3,189	905	2,750	35,463	3,250	75	331	1,069	1,710			596		1,861		
평균	71,959	17,271	4,716	84,983	47,871	1,149	2,137	7,087	3,682	13,354	1,667	38,865	200	17,761		

2. 인력 지원 방안

가. 총액인건비 반영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지원 방안은 총액인건비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총액인건비 산정시(9월경) 반영* 희망

* 정부시책추진 관련 인력반영 사례 : 4대강 유지관리, 가축질병방역, 외국인주민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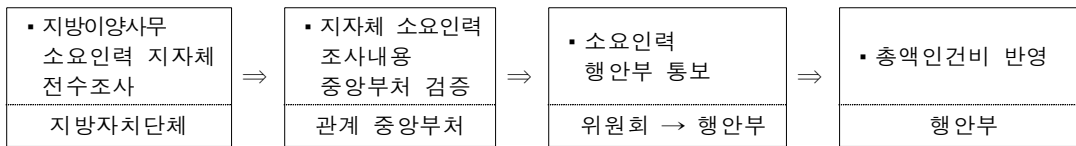
□ 사무이양에 따른 실무지원인력 이양 동반이 필수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인력지원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이양사무의 행정 서비스 품질 하락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양사무 처리부서 등에서 행안부 및 지자체 조직부서에 신설사무 증가분에 대한 인력증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인력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총액인건비 방침으로 지자체 자체 인력확보 한계, 선이양 후보완으로 인한 중앙부처 무관심

□ 지방이양 완료(확정)사무에 대해 매년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총액인건비 산정시 지방이양사무 인력을 반영하도록 추진

○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기 이전인 매년 10월 이전 1년간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대상으로 소요인력 조사

- 1차로 일정한 조사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요 인력을 파악*하고, 이양 관련 중앙부처의 검증을 거쳐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에서 소요인력 확정
 - * 인력만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인력·비용 조사 시 병행
- 위임사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되는 경우가 많고, 재위임이 될수록 이양사무의 수행에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재위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함**
- 소요인력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기준인력 항목으로 '지방이양사무'를 추가하여 총액인건비 반영**



나. 중앙-지방간 인력 상계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의 인력 소요를 총액인건비에 반영 시키되, 중앙의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인력을 줄여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증원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임
 - 1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사례에서도 지방으로 이관된 사무에 인력이 이관되면서 해당 중앙부처 인력의 감소가 있었음
 - 중앙부처의 인력을 직접 감소시키거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소속을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축
- 다만, 개별이양사무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인력 상계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음
 - 어떤 사무의 경우 중앙부처의 인력을 감할 정도의 사무가 되지 않지만, 여러 중앙부처의 사무들이 합쳐질 경우 지방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김
 - 중앙의 인력은 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이양사무를 합치는 개념에서 보면 지방에서는 인력 소요가 나타날 수 있음

3. 이양 재원 확보 방안(지자체 권의 및 전문가 의견)

가. 지방이양관리기금 신설

- 내국세의 일정분, 예를 들어 내국세의 0.1%를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사무이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지방이양관리기금 신설
 - 매년 1~2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비용을 측정하고, 그 비용만큼 적립된 지방이양관리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이양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
 - 국회에서 지방분권특위 구성을 통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시 사무일괄 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 지원금으로도 활용 가능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광특회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세율이나 총액을 인상시키지 않을 시 기존의 사업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방이양관리기금의 경우 지방이양만을 위한 별도의 경비로 활용 가능
 -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에 변동이 있을시 내국세 적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응
- 제도 신설 한번으로 추가적인 제도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지방이양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활용한 별도 기금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지방이양 재정 지원 제도 도입으로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이양 제안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이양재원 확보는 용이한 반면, 새로운 기금 설치에 따른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음

나.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

- 재원사용의 자주성과 과세 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합리적 배분 방식 도입 필요
 - 국가의 정책세원으로 투기억제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다 중과세제 폐지,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책기능이 감소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필요성 제기
 - * 1967년 신설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기원으로 하고, 1975년 종합소득세제 도입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전환되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등 정책적 효과 거양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임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세로서 세원의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방이양이 가능하거나, 지방이양 지원을 위한 세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사무 지원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원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여 타당성과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시 세원이 수도권 및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므로 지방소비세와 같이 가중치 등 지역안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양사무 재원 규모와의 불일치, 지역간 재원편차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세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 설치 시 보조율 없이 인건비 및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어 기존 재원의 보조율 지원으로 인한 반발 해소
-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미약하여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 재원화하여 지방재정 지원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원 없이 지자체 수행으로 소요되는 과도한 인건비 등 부담을 해소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이양 재원 확보

다. 분권교부세에 지방이양 재원 반영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로 나누어져 있음
 - 분권교부세는 90개 사업 중 52개 사업이 복지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한 교부세이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성·보편성이 가장 기본적인 교부세임
 - 일반행정관리와 관련된 재정수요는 인구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지표를 통해 산정되며, 지출대상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는 없음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 사회복지사무 등 일부 지방이양 사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에 산정
 - 보통교부세의 경우 서울시 등과 같이 불교부단체가 있으므로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 재원을 산정하여 분권교부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현재 분권교부세가 2014년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권교부세 한시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행령 등 개정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전체 이양사업으로 확대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율을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해야 할 것임
 - 현재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94%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년 지방이양 소요비용만큼 분권교부세율 인상 필요
 - 분권교부세율 인상 없이 지방이양 재원을 반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지방이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지방이양사업 증가분을 분권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라. 광특회계 內 지방이양계정 신설

□ 20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광특회계*는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총 22개 포괄보조사업인 지역개발계정,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광역발전계정, 제주특행기관 이관사무 및 자치경찰 운용비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재원은 9.9조원(주세 2.9, 전입금 및 부담금 5.8, 기타 0.9)

□ 광특회계에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에 따른 특행기관의 지방이관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광특회계 별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방이양사무의 자원 확보를 위해 **특정 자원 일부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체 회계 규모를 증가시키고, 그 부분을 지방이양사무를 수행하는 재원으로 조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므로 제32조 계정구분에 지방이양계정을 신설
- 아울러 동법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이양계정에 대한 세입·세출을 규정

□ 광특회계 내 지방이양계정 신설시, **추가 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

- 현재 광특회계 자원(세입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지방이양 계정만 신설할 경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타 사업비의 축소 불가피
- ‘지방이양 계정’ 신설시 광특회계의 타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원 확보 필요

- 광특회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되는 각종 전입금 및 부담액 증액 등의 방안이 있음
 - 주요 재원 중 증액이 어려운 주세를 제외한 부담금 및 전입금, 임대료,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증액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등을 광특회계 세입으로 조정하여 추가 재원 확보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광특회계 세입·세출원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세입과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추계하여 적정비율을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별도 재원이 확보되면 광특회계 재원을 늘리면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충당해 나갈 수 있음
 - 광역계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비용을 보전하고, 지방이양사무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
 - 지방이양계정이 신설되면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계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특회계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무에 대해 지원을 제외한다는 기재부 지침 개정과 지방이양 재원에 한해 매칭 의무를 폐지하고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4. 법령 제·개정 사항

□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방자치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가칭 『지방일괄 이양법안』 마련 시 지원 근거 조항 포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상징적으로 관련조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속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가 지방에 이양한 사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규정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한시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지방이양사무 지원 명문화

법령예시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2조(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사무를 적극적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또는 대체법안에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근거 조항 삽입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사항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력 및 비용 조사, 중앙행정기관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반영

법령예시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매년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재정 지원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이양시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2013년 5월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특별법 부칙 삭제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체입법의 마련이 필요
- 제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가칭『지방일괄 이양법안』이 제출되면, 동 법안에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 근거 조항 마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확정이 되는 사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 우선 일괄이양법안에 의해 부처별로 일괄이양이 되는 사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인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령예시 - 【(가칭)지방일괄이양법안】

제00조(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를 총액인건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이양된 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정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조(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해 지방이양된 사무의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인력증원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권교부세율은 지방이양된 사무의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또는, 법령 제정과정에서 일괄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인력과 재정소요를 파악해서, 인력은 총액인건비로 반영하고 재정은 별도 자원 확보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과 재원도 함께 일괄 이양
- 지방이양사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법 개정 필요
 - 지방이양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분권교부세, 광특회계 등 이양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택된다면 관련 개별법 개정

5. 對 국민 관점에서의 지방이양 문제 고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제도화와 관련 對 국민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지방재정 확충, 對 국민 서비스 차원 등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인력 지원 방안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총액인건비 반영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인력 증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야 할 것임
 - 최소한의 인력 산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인력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력의 소요가 줄어드는 업무조정 등 자체적인 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 증원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재정 지원 부분은 지방재정 확충 차원이나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국가에서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경비만큼 지방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對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존 수혜의 대상인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음
- 근본적으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원리에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對 국민 서비스도 보다 근거리에서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지방이양사무 행·재정 지원 제도화방안 관계부처 검토의견

분 야	검 토 의 견
1. 인력 지원 방안	
총액인건비 반영	<p>《행정안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은 높이면서도 과도한 조직 팽창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신규업무 발생 이외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소요는 인력 및 인건비 이체가 원칙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인력 조정계획 고려 없이 지자체 총액인건비에만 우선 반영하는 것은 곤란 ○ 중앙부처가 권한 이양을 추진시 소관부처가 자기책임 하에 인력 조정 계획 및 인건비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인력은 부처에서 자체감축 후 행안부 조직실 통보 - 지자체 이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은 각 지자체 및 행안부 자치제도과로 통보하여 인력 증원 반영 <p>※ '09~'10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시 정원이체 참고(520명)</p>
2. 이양 재원 확보 방안	
<p>《기획재정부 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외 대부분의 지방이양 사무는 집행,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단순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9.16)』에 따라 '14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후 평가 등을 통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지방이양관리기금 신설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범위 및 재원 등은 이양시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별도의 기금은 불필요 ○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시에는 교부금 등 조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 ○ 또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조달없이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요건에도 부적합 <p>※ 국가재정법 제14조(기금신설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② 기존 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의 사업 수행이 더 효과적일 것 등

나.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한 특별회계 설치

《기획재정부》

-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문제는 국세·지방세 체계, 중앙 정부 재정여건,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지방재정조정 제도 등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
- 또한, 양도소득세의 전국합산 누진과세 체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세로는 부적합**
- 양도소득세는 경제 활성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요한 거시 정책수단**으로서 전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여야 하므로 개별 지자체에서 집행하기 곤란하여 **지방 세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65% 이상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 세목 으로서 연도별·지역별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지방세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세원으로 운영하는 것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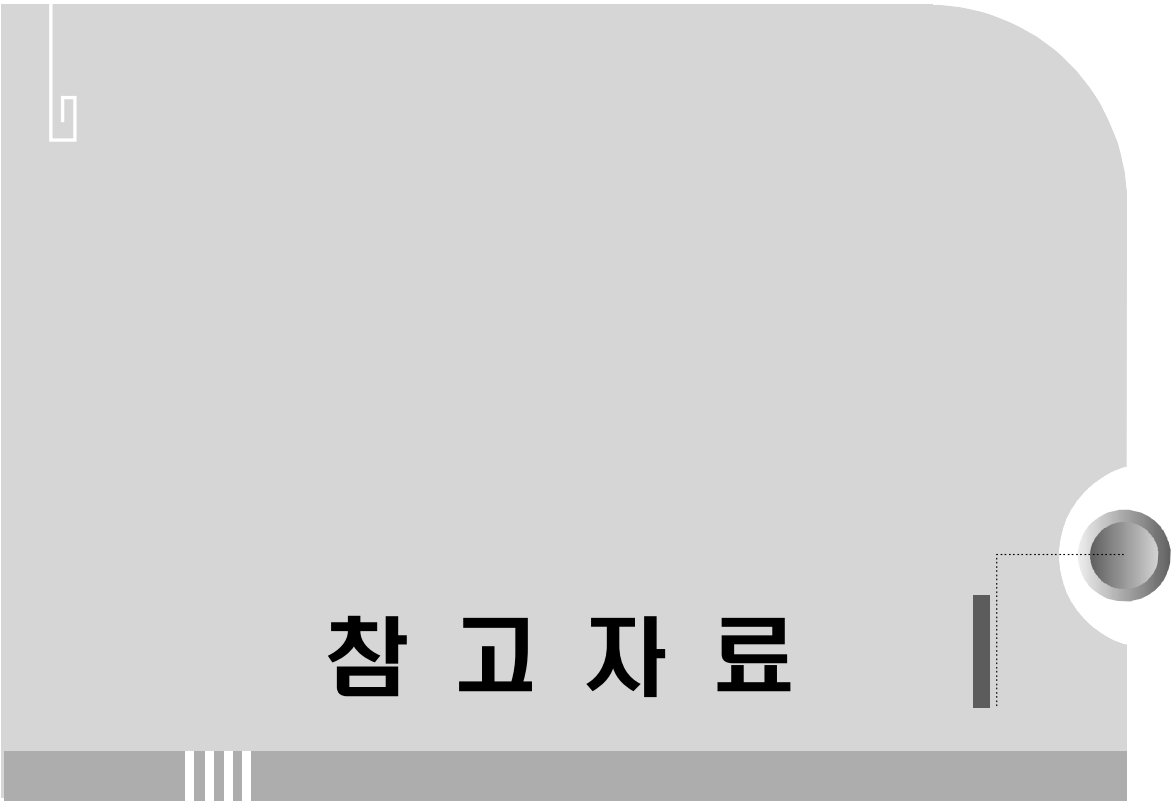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 현행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또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이 필요**하며, 이중 부동산 양도 소득세 지방세 이양시 부동산관련세제 일원화, 지방세 구조 개선, 체납세 축소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논거
 - ① **부동산 관련 세제 일원화 가능**
 - 과세대상이 지역에 정착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방세 보편성·정착성의 원칙에 부합
 - 부동산의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처분(양도소득세) 단계 에서 징수권자가 일원화되어 부동산에 대한 세제정책의 효율성 향상
 - 자치단체가 부동산관련 공부를 관리하고 있어 세원포착이 쉽고, 부과·징수도 용이

	<p>② 지방세 구조개선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지방세의 재산과세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고, 수도권 집중도*는 특별히 높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기준 : 부동산 양도소득세(62.2%), 재산세(66.0%), 취득세(56.6%) - '10년 기준 양도소득세(8.1조원)는 지방세수입 49.1조원의 16.5% 수준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부동산정책에 따른 세수변동으로 세수 안정성에 다소 미흡 <p>③ 체납세 축소 및 민원발생 최소화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의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취득세·재산세와 연계하여 징수행정을 하는 경우 체납을 인하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96.4%, 등록세 99.3%, 재산세 96.3%, 양도소득세 76.5% - 비과세·감면 관련자료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어 민원 축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민원 중 양도소득세 처리비중 : 이의신청 35.7%, 심사청구 36.7%
<p>다. 광특회계 內 지방이양 계정 신설</p>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 사무는 더 이상 국가사무가 아니므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특회계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은 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음 ○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의 추진을 위한 재원소요는 필요시 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 조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계정 지방이양사무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경우로서 동일사무가 타 시도의 경우 국가사무로 남아있어 교부금 및 분권교부세 등으로 조정 불가
<p>라. 분권교부세에 지방이양 재원 반영</p>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자치단체 요구 및 감사원 지적('08.5월)을 감안하여 '09.9.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 연장('09년~'14년)하면서 동 기간 동안 대상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이후 동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 필요

	<p>《행정안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분권교부세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후 사회복지수요 급증 등 관련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재원은 법정률(내국세의 0.94%)로 고정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분권교부세 재원은 연평균 5.9% 증가, 대응 지방비는 15.5% 증가 → 지방비 부담률은 이양 전보다 13.9%P(56.5→70.4%) 증가 ○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지방부담 가중 문제 해소를 위한 일부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국고환원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의 대책이 우선 전제될 필요 -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련 비용이 분권교부세 재원 확충과 연계토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권교부세율은 법정률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그 재원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필요
--	--

<p>3. 법령 제·개정 사항</p>	
<p>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p>	<p>《행정안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분권에 관한 사항은 제도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해 왔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99.1~'08.2) ▸ 지방분권특별법 ('04.1~'09.1, 5년 한시법)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08.6 제정~'13.5, 5년 한시법) </div> ○ 현재도, '사무의 지방 이양이나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은 법적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동일한 선언적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중첩적으로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5.30] [법률 제8865호, 2008. 2.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법·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함께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야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 추진일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정책의 시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과 참여의 원칙)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세의 세원 및 비율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추진기구)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추진일정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8865호, 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사무 중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 본다.

②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존속하는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업무는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잔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조(지방이양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사무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로 보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6.20] [대통령령 제20834호, 2008. 6.2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7조에 따른 지방분권 지원단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회피) 위원장이나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맡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무기구)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지원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분권지원단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834호, 2008. 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부칙 제2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8월 31일 당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6486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42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2008년 6월 30일”을 “2008년 8월 31일”로 한다.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61
----------	------

발의연월일 : 2007. 3. 21.

발 의 자 : 유기준·이인기·안상수
정갑윤·김정권·이해봉
김영덕·배일도·김충환
공성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1999년 8월 30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이 법을 운영한 결과,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부족으로 쉽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무심사에만 한정되어 현행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중앙부처 위주로 제·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그 결과 반분권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무배분체계를 분권이념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또한 사무의 지방이양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주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외에도 지방이양결정 후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며, 회의체 운영상의 문제로서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사무기구 인력이 과건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화 하는 방안과 사무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령상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보완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본위원회와 실무 위원회간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다. 위원회 사무처의 상설화, 전문위원 및 공무원 등의 과건제도 등을 개선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라. 정부의 법령 제·개정시 사무의 구분 및 배분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함(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마.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의뢰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지방간 사무의 배분 및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한다)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3조(지방이양 및 사무배분 등의 기본원칙) 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리, 생활편의, 질서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어 현지에서 주민근접 집행이 요구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영향력의 범위, 규모의 경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전국적 통일성

유지, 국가의 존립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할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

5. 지방자치단체가 배분 또는 이양 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 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 또는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포괄적으로 배분 또는 이양할 것

6.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할 것

7.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중 시·군·자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무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로 배분 또는 이양할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또는 이양한 사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사무처리기준의 고시근거를 당해 법령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등의 기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그 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병행)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6조(설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제29조제2항에 의한 이양사무의 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대상사무 및 기능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및 기능의 배분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구분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또는 기능의 구분, 배분, 신설과 소관변경의 내용을 정하는 정부 제출 법령안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6. 사무 또는 기능의 신설(국가위임사무의 신설을 포함한다) 및 소관변경(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구분 또는 사무배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추진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8.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된

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2조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사전검토, 사무 등(중·대 기능의 이양 또는 배분은 제외한다)의 지방이양과 구분 및 배분결정, 법령안 사전심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대 기능의 이양 또는 배분을 제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 후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무의 구분 및 배분에 관한 법령 사전심사

제16조(사무구분 및 배분 등에 관한 사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법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듣기 전에 합리적으로 사무가 구분 또는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관사무를 구분, 배분, 신설·변경 및 폐지하는 사항
2.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 특정 지역에 만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운영·선거 및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제17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구분과 배분, 신설 또는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무의 구분과 배분, 신설 및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령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심사의견

3. 제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요지

제19조(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무배분이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 및 기준 등과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사무(이하 “심사대상사무”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대상사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무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①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심사대상사무라고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한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사무를 구분, 배분, 신설하거나 소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사무배분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의 신설 및 소관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사무배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소관변경 권고결정) ①위원회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무의 구분, 배분, 신설을 철회하거나 소관을 변경하도록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권고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심사 준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를 구분 또는 배분하는 법령을 제·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를 구분, 배분, 신설 또는 소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구분 또는 배분, 신설 또는 소관변경을 포함하는 법령 제·개정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무의 구분, 배분, 신설 또는 소관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

제2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대상사무의 조사) ①위원회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대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진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추진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필요한 사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조사) 위원회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조사 결과에 포함된 사무와 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상사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대상의 선정)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제28조(대상사무의 확정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의하여 선정한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및 기능의 배분 대상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이양의 특례 등)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또는 사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중앙행정권한을 이양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이양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가 그 업무의 성격,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양사무의 환원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

제30조(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이양의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원의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의 의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확정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재심사 및 그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추진실태의 점검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운영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56호, 2000.8.1, 제정]

제1조(목적)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직무) 지원단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분석
2.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 협의·조정
3.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이행상황 확인·조사
4. 기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2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지원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인
2.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자치제도과장·재정경제과장·교부세과장
3.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4인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급 공무원 4인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실무위원 3인 및 지방이양지원팀장
5.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약간명

④ 지원단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이양지원팀 소속 공무원이 된다.

제4조(회의)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5조(실무작업반)①지원단의 활동을 보좌하고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실무작업반으로 인력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각각 둔다.

1.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분석 및 이견 조정

2.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실무작업반은 각각 반장 2인과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작업반의 반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분야 실무작업을 총괄 한다.

제6조(인력지원반)①인력지원반의 반장은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과 자치제도과장이 된다.

②인력지원반의 반원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 및 자치제도과 소속 공무원 각 1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7조(재정지원반)①재정지원반의 반장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재정지원반의 반원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교부세과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각 1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①실무작업반의 반장중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반장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이양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이관되어야 할 인력 및 예산을 각각 산정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지원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실무작업반의 반장중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과 재정경제과장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을 각각 산정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